용역 계약서

(주)지앤비넷(이하"갑"이라한다)과 <u>김지훈</u> (이하"을"이라한다)는 용역계약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상기 계약의 증거로 용역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별첨1의 용역수행범위를 2부씩 작성하여 각각 기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 다 음 -

1. 계약번호 : 2021-CON-0515-001 2. 용 역 명 : e-P&ID Viewer 개발

3. 용역기한 : 2021. 05. 15 ~ 2021. 07. 14 4. 계약금액 : 일금 일천만원정 (₩10,000,000)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금액 3.3% 공제 후 지급)

5. 계약보증금 : 생략

6. 하자담보책임기간 : 6개월

7. 지체상금률: 0.25%

8. 기성 지급 : 발주자 지급조건 (선금 30%, 잔금 70%)

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용역에 필요한 모든 노력과 기계, 기구 및 재료를 구비하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별첨1의 용역수행범위 등의 모든 조건이 계약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준공 기간 내에 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

2021. 05. 15

"갑" "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 (문래동5가, 대륭오피스텔) 206호 주 소:

주식회사 지 앤 비 넷 주민번호 :

대표이사 박 선 민 이 름: (자필서명)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 (목 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하고 용역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쌍방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3조 (용역의 완료)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수 완료된 날을 작업종료일로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생략)

제5조 (용역비의 청구 및 지급) 용역비의 청구는 검수가 완료된 날 용역대가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용역비의 지급은 검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현금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체상금) "을"이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5/1000를 곱한 금액을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제8조 (용역결과의 귀속) 본 용역의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노하우 및 기술정보, 작업내용, 결과물 등은 "갑"의 귀속으로 한다.

제9조 (신의성실과 상호협력) ① "갑"과 "을"은 상호 신의를 가지고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갑" 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의 보장) "갑"과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 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계약 이행상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시 "을"의 용역수행 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권리나 의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용역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수행 중도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을"은 계약해제시까지의 용역 업무 집행 정산서를 "갑"에게 제출하며, 용역비 정산은 용역해제시까지 비용분으로 한다.

제14조 (업무의 연속성) ①투입중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 1개월전 고지후 2주간의 인수인계 의무를 가진다.

②인력의 무단이탈(무단결근포함) 투입중단 고지 미준수 인수인계 의무 미준수시 해당하는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16조 (계약내용의 위배) "을"은 용역목적물의 인도 전후를 불문하고 수행한 부분이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자비로 보수, 개조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한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소의 제기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별첚1.

용역 수행 범위

가. 제 목: e-P&ID Viewer 개발 (CadViewer를 이용하여 기본 기능 구현)

나. 업무범위:

- 1)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CadViewer API를 이용하여 반응형 웹 캐드 뷰어 개발
- 2)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되 우선 태블릿에서 구동 가능토록 개발 (범위 제한)
- 3)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Oracle DB를 이용하여 데이터 연동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

■ 화면 개발

- 도면 트리
- 설비 트리
- 도면 뷰어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CadViewer를 이용하여 기본 View 기능 제공)
- 설비 트리와 도면 뷰어의 연계 (DB내의 핸들값을 이용한 쌍방향 네비게이션)

■ 개발환경 구성

- Web: ReactJS, CadViewer
- WAS : NodeServer TSOA, 도면트리 정보, 설비트리 정보, Orace 연동
- CadViewer Conversion Server: DWG to SVG

(Web -> WAS(도면) -> Conversion 서버)

디. 발주사에서 제공할 정보:

- 1) Oracle 데이터베이스 Dump
- 2) 도면트리, 설비트리 Query 정보
- 3) 트리구조에서 아이콘 파일 적용 가이드
- 4) 데이터베이스의 도면을 호출하기 위한 가이드



비밀유지계약서

주식회사 지앤비넷(이하 '값'이라 함)와(과) 김지훈(이하 '을'이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값'와(과) '을'이(가) 『 (e-P&ID Viewer 개발)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값' 또는 '을'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 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 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가 없더라도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
-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자료(도면 포함),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 모든 정보는 비밀유지 범위에 포함되며 상대방은 모든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본 업무'의 내용 및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비밀로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절대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 ③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절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만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
 -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 5. 각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한 정보
 -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 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 ② 각 당사자가 제①항 제5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①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한 제조물의 판매나 이용 등이 금지되며 이를 이용한 제3자와의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위약벌)

-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①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금 ['본 업무'계약금액]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값'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값'와(과) '을'는(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15일

"값"

주식회사 지앤비넷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 206호(문래동5가, 대륭오피스텔)

대표이사 박 선 민 (인)

"을'

주 소:

주민번호 :

성 명: (자필 서명)